

청주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0가단356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수취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상배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문국

변 론 종 결 2021. 12. 10.

판 결 선 고 2021. 12.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1. 8. 충북 청원군 C 답 3,26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3. 4. 26. 위 토지를 D에게 매도하고 2013. 10.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청주시 상당구 E 답 2,402.1㎡에 관하여 2013. 10. 30. 원고의 종중원인 피고, F, G, H, I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6. 13. G의 합유관계 탈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다. 청주시 상당구 J 답 1,9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10. 31. 원고의 종중원인 피고, F, K, H, I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회장이었던 사람으로서 종중 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 소유의 청주시 C 답 3,263㎡를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청주시 상당구 E 답 2,402.1㎡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 종중원들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종중원인 L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L에게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자신이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1억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의 종중규약 제15조는 종중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종중재산의 보존(보전) 관리 수익에 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의 이사회는 2018. 1. 21.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여 결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나. 피고

법인 아닌 사단인 원고의 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종중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은 먼저 종중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는바(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참조), 갑 5,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11. 14. 개정된 원고의 규약 제15조는 종중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종중 재산의 보존(보전) 관리 수익에 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2018. 1. 21. 개최된 원고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종중의 회의도 없이 타 종중원을 삼입시켜서 매도한 것을 계약파괴 소송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위 규약은 2018. 11. 14. 개정된 것인바, 위 이사회가 개최된 2018. 1. 21. 당시 적용되는 규약도 종중 재산의 취득, 처분, 보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은 점, ② 설령 개정 전 규약도 종중 재산의 취득, 처분, 보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이사회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소제기가 결의되었을 뿐이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여 원고 규약에 정한대로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종중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참조), 피고가 취득하였다는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제기를 하면서 원고가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제기를 결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결국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소제기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김수영